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의 보수월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건강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면제 적용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소득자료·신고금액이 없거나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(안 제38조제3항)
- 나.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·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액 면제 적용(안 별표 2 제3호타목 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8. 21. ~ 10. 5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금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.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: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

가.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,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

나. 해당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사업소득에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

별표 2 제3호타목1) 중 “해당한다”를 “해당한다. 다만,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.”로 한다.

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(제19조제1항 관련)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. 다만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·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·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)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.

타.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- 1)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(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. 다만,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.)를 받는 경우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.	제38조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금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. 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: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.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,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. 해당 보수월액을 산정하는

	사업소득에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락처	(044) 202 - 2706